

##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List of issues concerning additional and updat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sideration of the third and fourth report of Republic of Korea.

### Part I

**Q1. Please provide the most recent activities report of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Please briefly explain which Government body now deals with issues relating to children and promote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cross ministr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t all levels in the country.**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

1. UN아동권리위원회의 이행권고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고, 2004년 동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빈곤아동 및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가장 최근의 4차 회의에서는 아동정책추진의 방향성과 효율성, 아동정책연구원의 설치,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재정부담, 아동학대 신고전화 정비,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 및 교육,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제도화, 국제적 수준의 아동정책 추진 노력 등을 논의하였다.
3. 대한민국은 많은 협의와 부처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정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룬 아동관련 안건은 8건이다. 이와 함께 11개의 관계부처로 구성되어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각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4.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룬 아동관련 안건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 방학 중 아동급식 대책, 방학 중 아동급식 제도개선, 학교급식 지원방안, 학교급식 등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추진계획, 아동안전 보완대책, 입양제도 선진화 방안 등이다.
5. 정부는 2005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여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5개년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5-1. 동 위원회는 2008년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일괄 개편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총 231개 과제를 확정하는 바 있다. 2011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휴가·휴직제도 개선, 시간제 근무 활성화 및 스마트 워크센터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부부처와 시민단체간의 조정·협력 증진]

6. 아동권리 관련 정부부처와 시민단체간의 조정·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2006년 10월부터 국책연구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중이다. 또한 국내·외 아동관련 단체들과의 유기적 협력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관련 주요 단체와의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7. 정부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통하여,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법·정책 등 제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권리옴부즈퍼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아동권리 침해사태를 발굴하고, 법·정책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아동관련 민간전문가와 장애, 다문화, 시설 등 특성별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기(2006. 10~2009. 12)는 성인 21인, 아동 10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제2기(2011년)는 성인 10인, 아동 10인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8. 정부는 아동단체협의회에서 '대한민국아동총회'와 '아동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매년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하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권리신장과 아동복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아동관련 주요 단체(굿네이버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Save the Children, 어린이재단)와의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정책 등 제도마련 및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연합회 성격을 가진 '한국아동복지협회'를 CDA 후원 등 관리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9.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청소년시설단체, 교육기관 등 관련 전문가 11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심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하여 민간주도의 범국민적 청소년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Q2. Please describe any impediments to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its members, and outline the safeguards in place to protect their independence. Please indicate whether the Commission has the competence to receive complaints and whether it has specific expertise to deal with children's rights. Please also briefly explain any limitations to the mandate of the Commission and the scope of geographic coverage.**

10.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인적 구성의 독립성 및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2009년 동 위원회에 대한 조직축소개편으로 조직 및 재정의 독립성 측면에서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11.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관련 민원접수 등 아동권리 침해사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사인 간에 발생한 인권문제는 원칙적으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영역에서의 차별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에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 모든 생활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민원접수를 충실히 행하고 있다.
- 11-1. 동 위원회는 아동인권정책 관련 전담자를 배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사태에 적극 대처하는 등 다각적으로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동인권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아동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동권리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향후 동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아동권리모니터링과 옴부즈퍼슨의 운영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12.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침해나 차별이 인정될 경우에 피진정인에게 개선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인권 관련 법·정책 등 제도에 대해 해당 기관에 개선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불수용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권고를 불수용할 시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공표함으로써 제한점을 다소 해결하고 있다. 향후 권고의 강제력 부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합의·조정 등 대안적 구제수단을 활성화하고 위원회의 권고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12-1. 위원회는 진정인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지역사무소(부산, 대구, 광주)를 두고 있고, 2005년도부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순회상담서비스는 2005년에 2회, 2006년에 4회, 2007년에 9회, 2008년에 10회, 2009년에 6회, 2010년에 11회 실시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순회상담 서비스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일부 학교의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검토를 실시하였다. 향후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인권순회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인권사무소를 증대할 계획이다.

**Q3. Please provide updated data on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welfare, health and education systems for children, specifying the level of expenditure per child. Additionally, please explain how any inequalitie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budgets of local governments for children are addressed.**

13. 2011년 아동관련 예산은 총 38,697,800백만원으로 2008년 대비 약 16.5%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복지(보육포함), 청소년, 기타 아동사업 등 아동분야 직접예산은 2011년 32,131,000백만원으로 2008년 대비 70.6% 증가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 예산은 2011년 35,484,700백만원으로 2008대비 13.5% 증가하였다.

14. 2011년 기준 아동 1인당 재정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 7,327,174원, 재정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1,181,057원으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아동관련 예산의 확충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와

보건복지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에 아동업무를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아동정책 확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사업 등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간 예산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있다.

<표 1> 아동관련 예산의 변화

(단위: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전체 세출예산(기금포함)	257.2조	273.8조	292.8조	309.1조
유아 및 초중등 교육	31조 2,770억원	32조 9,681억원	32조 5,467억원	35조 4,847억원
아동복지(보육포함)	1조 5,118억원	1조 8,954억원	2조 2,760억원	2조 6,534억원
아동관련 예산	1,690억원	1,508억원	1,904억원	2,641억원
기타 아동사업	2,022억원	2,531억원	3,417억원	2,956억원
계	33조 1,600억원	35조 2,674억원	35조 3,548억원	38조 6,978억원
(증감율)	-	(6.2%)	(0.2%)	(9.5%)
아동인구	10,491천명	10,247천명	9,976천명	9,688천명
1인당 지출비용	3.2백만원	3.4백만원	3.5백만원	4.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1

<표 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관련 예산 및 아동 1인당 지출비용

(단위: 백만원,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아동관련 예산 (백만원)	아동 1인당 지출비용 (원)	아동관련 예산 (백만원)	아동 1인당 지출비용 (원)	아동관련 예산 (백만원)	아동 1인당 지출비용 (원)	아동관련 예산 (백만원)	아동 1인당 지출비용 (원)
서울	1,509,230	772,516	1,799,911	949,932	1,955,325	1,067,732	2,139,719	1,181,057
부산	2,677,627	3,509,934	2,814,912	3,805,313	3,014,806	4,189,057	3,228,340	4,544,500
대구	2,086,374	3,853,380	2,249,110	4,287,874	2,280,592	4,492,936	2,274,119	4,529,378
인천	2,305,401	3,401,917	2,389,428	3,592,044	2,512,196	3,837,300	2,455,469	3,769,109
광주	1,467,991	4,138,777	1,587,799	4,554,866	1,738,012	5,090,226	1,735,187	5,081,953
대전	1,320,799	3,802,775	1,449,797	3,803,375	1,522,472	4,308,472	1,472,289	4,493,988
울산	422,448	1,481,260	655,436	2,353,696	526,340	1,944,575	563,639	2,107,274
경기	8,766,104	3,105,737	9,444,220	3,372,692	9,419,589	3,383,582	9,462,709	3,420,525
강원	1,938,348	5,904,593	2,052,216	6,368,417	2,223,512	7,052,231	2,064,741	6,548,663
충북	813,052	2,553,788	902,560	2,890,865	1,059,373	3,321,023	883,682	2,795,657
충남	970,017	2,258,785	1,222,759	2,859,760	1,112,918	2,630,800	1,068,674	2,548,375
전북	1,125,146	2,762,172	1,164,601	2,918,039	1,270,785	3,275,675	1,440,325	3,807,301
전남	2,534,350	6,455,594	2,646,535	6,946,833	2,603,132	7,050,011	2,668,491	7,327,174
경북	1,128,460	2,010,605	1,565,995	2,865,478	1,906,147	3,575,878	1,732,103	3,243,505
경남	3,150,085	4,379,632	3,214,887	4,564,688	3,254,529	4,417,821	3,430,849	4,657,164
제주	618,044	4,357,394	627,757	4,481,002	651,932	4,720,246	653,271	4,750,751

주: 아동관련 예산은 광역단체 예산만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1.

**Q4. Please provide data on the key indicators emanating from the child rights index. Please explain which agency has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data from the index and how such information is used in the context of child rights monitoring, policy making and programming.**

15. 정부는 아동권리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03년 '아동권리지표', 2006년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청소년인권지표' 등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주요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였다. 정부는 이들 지표의 수집 및 배포를 책임지고 있으며, 아동관련 국책연구기관, 민간단체, 학자에게 위탁하여 이들 지표를 수집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16. 정부는 아동권리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8년에 이들 지표에 근거하여 아동정책을 평가(아동종합대책평가)하였고, '아동정책5개년계획' 수립과 아동권리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 16-1. 2008년 시행된 '아동종합대책평가'는 아동 3대 종합대책 중 '어린이보호·육성 종합대책'과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에 대한 참여정부 아동정책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였다. 23개 지표에 의해 추진된 평가결과로 효율적인 아동정책의 조정 및 점검이 이루어졌고, 빈곤아동의 최소한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건강 및 영양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취약계층의 범위를 절대 빈곤층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방지를 위해 관련부처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체계적, 효과적 정책수행이 가능해졌다.
17. 주요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아동빈곤율은 2009년 7.7%(경상소득기준)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강화에 힘입어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2008년 415,519명, 2010년 485,8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많아졌으며, 2010년 국내입양아동 수는 1,462명, 국외입양아동 수는 1,013명이다. 2010년 기준,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체학생 중 63.3%로 2008년(54.3%) 대비 9%pt 증가하였다.

**Q5.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nitial results and impact of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2011 in respect of children's rights.**

18. 정부는 2007년 5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으며,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 아동권리 관련 국내 헌법,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내 현황,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2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권리와 직접 관련된 과제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제도 운영, 성매매 피해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 확충, 성매매 피해 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저소득층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강화,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다.

19. 정부는 수립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매년 말 각 부처에서 제출한 국가행동계획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책자로 발간·배포함으로써 이행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 인권문제를 전체 인권정책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정책 이행결과를 재확인하는 등의 노력으로 아동권리 인식이 증진되었다. 정부는 2011년 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이 종료됨에 따라 2012년 1차 계획의 결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Q6.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made towards the enactment of a non-discrimination bill.**

20. 정부는 2007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이 2008년 5월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차별 관련 국내법과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제정 추진 여부와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있다. 2008년 차별금지에 관한 EU지침,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의 입법례를 연구하고 이를 번역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였고, 특히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에 관하여는 제정과정, 동법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적용 판례를 심도 깊게 연구하였다.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T/F를 운영하였고, 2010년에는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8개월 동안 일반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쟁점을 논의하였다.
21.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 구제조치의 수준정도, 차별금지에 관한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규율 정립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Q7.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awareness-raising and public education campaigns and programmes carried out to combat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children, in particular owing to gender, nationality, disability, birth and appearance, and on measures to prohibit discrimination and help children victims of discrimination.**

22. 정부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전교생대상 사이버교육, 양성평등교육 수준 진단 및 우수교원 인센티브제공,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방송 공익광고 등을 통해 아동차별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아동 밀집지역에 '다문화청소년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특성 및 다문화 아동의 상황·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2-1. 2010년 기준, 전체 유치원의 62.1%, 전체 초등학교의 84.6%, 전체 중학교의 78.4%, 전체 고등학교의 72.7%가 연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성평등교육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양성평등교육 기반구축을 위하여 매뉴얼을 활용한 양성평등 수준 진단 및 우수교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3. 정부는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2008)', '대한민국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2009)'라는 방송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해 아동차별 해소를 추진하였다.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공익광고로써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그들 역시 우리 주변의 가깝고 다정한 이웃이라는 캠페인이다. '대한민국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소외계층과 관련된 질문과 응답 형태로 전개되는 공익광고이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를 실천해온 유명 연예인 부부 모델을 기용하여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배려의 극대화를 유도하였다.
24. 차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진정 및 구제조치,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면서,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제조치의 이행과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권고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고발이나 징계 권고를 할 수도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외에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의 구제조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Q8.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outcome of the 2005 Five-Year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on the concrete measures adopted to help children victim to violence.**

2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1차)'의 추진으로 '기획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지역위원회'(시·도), '자치위원회'(학교)가 조직되었고, '학교폭력전담부서'(시·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 등 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체제를 갖추었으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서포터 제도' 운영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였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 학생 일대일 멘토링 제도' 등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25-1.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고 가해자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고 고위험군 학생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Wee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는 Wee 클래스(학교), Wee 센터(교육지원청), Wee 스쿨(시·도교육청) 등의 3단계 협력망이 연계된 학생안전 통합시스템으로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시스템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 wee프로젝트 체계도

구분	서비스	대상
1차 safe-net(wee 클래스)	단위학교에 설치	학습부진, 대인관계 미숙, 학교폭력, 미디어 중독,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2차 safe-net(wee 센터)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희망 학생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맞춤형 서비스	
3차 safe-net(wee 스쿨)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지속형장기위탁교육 서비스	
		학교나 wee센터에서 의뢰한 학생 또는 학업중단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26. 2005년부터 5년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1차)'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 활성화 및 폭력서클 해체 등을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2008년에서 2010년 3년 동안 가해학생 17,119명을 불입건 하였고, 폭력서클 439개를 해체하

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또한 2009년 11.3%로 2006년 17.6% 대비 6.3%pt 감소하였다.

27. 정부는 학업중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2006년부터 전일제 교육시설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업중단 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학업중단 학생은 61,920명으로 2009년 71,769명 대비 9,849명 감소하는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 향후 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피해학생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권역별 또는 시·도차원의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Q9. Please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introduce legislation t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in all settings, in particular in school and alternative-care settings. Please als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ilot "green mileage" system recently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28. 정부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석상 신체적 체벌의 여지를 두고 있던 제31조 8항을 개정하여 신체적 체벌을 전면 금지하였다. 더불어 서울시는 2010년 자체적으로 체벌금지령을 내려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금하는 교칙 제정을 완료했으며, 경기도에서 2010년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학교 내 체벌을 전면 금지하였다.
- 28-1.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에서는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9조에서는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있으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담당한다. 현재 3명의 학생인권옹호관이 배치되어 있다(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각 1명).
- 28-2. 양육시설 등 대안돌봄체계에서의 체벌폐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아동복지법」 29조1항(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명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매 3년 실시되는 아동복지시설평가에서 점검하고 있다.
29. 그린마일리지제도(온라인 상벌점제)는 선행 시 상점을 부여하는 반면, 일탈 행위 시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체벌 금지 대체 방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 기준 4,444교에서 시행 중이며, 상·

별점제를 포함한 체벌 대체 지도에 관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다.

**Q10.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periodic review of care and treatment provided to children in al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providing alternative care.**

30. 대한민국의 대안돌봄서비스는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들 수 있으며, 가정위탁에는 대리양육(친조부모 및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양육(8촌 이내 친인척), 일반양육 등이 있다. 대안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형태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30-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가정위탁 아동 및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사후지도 상황과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한다.
- 30-2. 정부재정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 가정에 대해 사례관리하고 위탁부모를 교육하며,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상담을 지원하는 등 위탁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친부모와 아동에 대해서 가족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친부모의 양육능력 회복여부, 아동양육에 부적절했던 원인들의 해결 여부, 친부모의 부적절한 보호에 의한 아동의 부정적 영향 및 정서적·행동적 문제들의 해결 여부 등을 배치 이후 매 3개월마다 모니터링하고, 평가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목표를 수정한다.
- 30-3. 가정위탁 아동이 향후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되게 양육될 수 있는 곳으로의 배치를 위하여 인테이크 및 사정(assessment) 이후 30일 이내에 친가정복귀, 입양, 친인척 장기가정위탁 등 '영구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30-4.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아동 배치 및 적절한 보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시설평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Q11.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amended in 2005 and 2007)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mended in 2004) the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and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available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31. 정부는 2005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청소년 대상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다.
- 31-1. 취업제한제도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예방 및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제한대상기관은 2011년 기준 총 240,172개소이며, 취업제한기간은 5년(2006.6.30~2008.2.3)에서 10년(2008.2.4 이후)으로 확대하였다.
- 31-2.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2008년 2월부터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등록·관리 및 경찰서 열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20세 이상의 대국민 공개로 확대하고, 등록기간도 최장 20년까지로 강화하였다. 2010년 말까지 대국민 공개자는 151명에 이르고,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167명이다.
- 31-3.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경우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적용에서 제외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신상정보 등록·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
32. 정부는 아동성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 및 일반 국민들의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인쇄물, 방송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일반인 대상 12,352회, 신고의무자 대상 1,788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33.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전문기관으로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9개 해바라기아동센터, 4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21개 원스톱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심리평가, 개별치료, 집단치료, 성학대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상흔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정기적인 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상담소, (소아)정신과 등에서도 성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Q12.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bill codifying the State party's obligation to intervene in adoption procedures, and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34. 정부는 가정법원이 양친의 입양동기, 양육 능력 등을 심리하여 아동 입양 여부를 허가하도록 하고 협의상 파양을 폐지하여 파양절차를 재판상 파양으로 단일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친생부모가 부적격자인 경우를 대비하여 아동 파양 시 친생부모가 바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011년 5월 공포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보조항인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항'에 대한 철회의 발판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국제 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필요성에 대한 관계부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Q13.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any studies, existing or planned, into the root causes of suicide among children, as well as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prevent and remedy this situation.**

35. 정부는 2011년 3월 30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에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 상반기에는 자살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모할 예정이다. 자살의 심각성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2004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2013년간의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 35-1. 동 법률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자살예방에 대한 연

구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관리체계 강화 등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2011년 5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Q14.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outcome the 2004 Measures Taken to Reduce Private Education Spending, the 2007 Plan to Reduce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efforts made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chool education.**

37. 정부는 지난 2008년 학원비 경감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였고, 2009년 공교육 내실화 추진, 선진형 입학전형의 정착,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37-1. 2006년부터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된 방과후학교를 2011년에는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은 494,965개(교과프로그램 338,891개, 특기적성 프로그램 156,074개)이며, 2006년(130,351개)에 비해 약 3.8배 증가하였다.
38. 정책성으로 2010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09년 대비 각각 3.5%, 0.8%씩 최초로 감소하였으며, 고교입시제도 개선, 학교 다양화,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정책효과의 시차(time lag)가 적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
39. 향후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단위 학교 자율역량 강화(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및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를 바탕으로 교실수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을 내실화하며, 방과후학교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 돌봄교실 확대 등 2009년부터 추진 중인 대책들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학교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Q15. Please explain how the denial of the right of children to appeal court judgments is related to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State party, such as the security situation as a divided nation and restoring public order in situations of national emergency.**

40. 국가비상사태에서 상소권 제한은 한국의 역사와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헌법」이 직접 심급제한의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입법부가 헌법적 수권에 의하여 결단한 법률의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 제534조가 아동의 상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41. 전시·사변 등으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만 적용되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상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동의 상소권이 문제되는 것은 14~17세까지의 아동이고, 14~17세 아동의 경우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이 있다고 보며, 간첩죄, 초병, 포로에 관한 죄 등 군부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재심(new trial)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Q16. Please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e Committee' s previous recommendations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o the State party' s reports submitted under the Convention (CRC/C/15/Add.197),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C/OPSC/KOR/CO/1)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C/OPAC/KOR/CO/1).**

42. 정부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국가보고서의 권고사항' 61개 항목에 대한 이행 현황은 이행 38개, 이행추진 18개, 이행미흡 5개이다. 보완이 필요한 이행미흡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는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 이를 추가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42-1. 아동의 상소권에 관한 유보를 철회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만 아동의 상소권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앞서 밝힌 바와 같다. 향후 남북 관계, 국내·외 정세 변화 등을 주시하여 아동의 상소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구해 갈 계획이다.
- 42-2. 현재 유보조항인 '입양허가제'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을 입양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2011년 7월 국회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양허가제를 도입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대한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안에도 가정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제가 포함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 42-3. 국내 및 해외입양 체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정부는 입양허가제 도입을 고려함과 동시에 권고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42-4. 정부는 해외입양과 관련된 헤이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에 의한 아동 입양허가제 도입에 따른 운영방식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 T/F 구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 42-5.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률과 상충되어 비준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관련 국내법률과 정책의 개선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비준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43. 정부의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차 권고사항 35개 항목에 대한 이행 현황은 이행 1개, 이행추진 32개, 이행미흡 2개이다. 보완이 필요한 이행미흡 2개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는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 이를 추가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43-1. UN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부서의 신설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을 정부가 계속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행 인력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아동인권 전담 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위원회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인력 및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43-2. 입양허가 유보 철회에 관한 사항은 ‘제2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추가 이행현황에서 밝힌 바와 동일하다.
44. 정부의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차 권고사항 13개 항목에 대한 이행 현황은 이행 5개, 이행추진 7개, 이행미흡 1개이다. 이행미흡 1개 분야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부서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차 권고사항 내용과 동일하다.

**Q17.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de facto working conditions of children, and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ratify ILO Conventions No. 29 (1930)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nd No. 105 (1957) concerning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45. 정부는 사업주 및 교사, 청소년에 대한 노동관계법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리더활동 등 청소년 주도적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소자 보호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2007.7)와 연소자증명서 비치 의무(2007.5)등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5-1. 지난 2008년에는 연소자(18세 미만) 고용 사업장 1,318개소를 점검하여 1,031개소, 2009년에는 1,641개소를 점검하여 1,408개소, 2010년에는 1,545개소를 점검하여 1,300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 중 사법처리는 2008년 7건, 2009년 3건, 2010년 2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는 2008년 1건, 2009년 2건 있었다.
- 45-2. 정부는 2010년 10월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정보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1년 6월 정부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45-3. 또한 2011년 5월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로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46. 정부는 ILO협약 제29호와 105호의 비준을 위해 향후 2011년 중에 '강제근로협약 비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법·제도가 협약 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비준 여부를 고려할 계획이다.
- 46-1. ILO협약 제29호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98년 ILO 협약비준을 위한 ILO 자문단 방문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ILO협약 전문가 초청 노사정 회의 개최, 2009년 ILO 국제노동기준국장 면담, 2010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동 협약의 비준방안을 검토하였다.
- 46-2. ILO협약 제105호는 정치적 강압, 정치·사회 제도에 대한 사상적 반대 및 과업참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나, 우리나라는 사상범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과업참가자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을 통해 노역이 포함된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어 비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46-3. 특히,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요원 등 전환복무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로 보기 어려워 강제근로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

나 전환복무제는 강제징집 제도 하에서 인력관리상 필요하고, 강제징집 제도는 남북이 대치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지가 불가피하다.

## Part II

### Q1. New bills or laws, and their respective regulations

47. (가사소송법 개정, 2009) 정부는 2009년 5월, 간편한 양육비의 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하여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직접지급 명령제도'를 시행하였다.
48.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0) 매일 오후 5~7시,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텔레비전방송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49.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개정, 2010) 청소년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가 오전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와 관련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방영해선 안 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더라도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정서를 감안하여 방송해야 한다.
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분리 입법, 20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피해자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분리 입법하여, 전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후자는 법무부 소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였다.
5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2011)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

였다.

5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1)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칙을 제·개정할 때 사전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도구,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였다.
5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1) 의료·재활교육소년원 출원자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재활교육소년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5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2011) 2011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와, 결혼이민자 및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구성된 가족으로만 한정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으나 이후에 취득한 자(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어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들로만 구성된 가족에게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을 신설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55. (도로교통법 아동관련 규정 제·개정, 2011) 2011년 5월부터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미신고 차량 포함)의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하차하여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5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2011) 2011년 6월 국회에 계류 중인 동법의 주요내용은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서비스, 지역사회전환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서비스 종사자 자격정보의 제공의무 부여' 등이다.
57.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011) 총 43조로 이루어진 현행 「아동복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75조로 이루어진 전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며, 주요 내용은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적정 위탁가정 선정절차 마련, 아동 금지행위 관련 규정 명확화, 친권상실 신고 청구요청권자 및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

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 제거, 실종·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및 아동긴급보호소 운영, 취약지역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아동복지전담기관 정비, 아동복지시설 유형 정비, 아동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개선·사업정지·폐쇄 등 명령 사유 추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이다.

## Q2. New institutions (and their mandates) or institutional reforms

58.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2009) 2007년부터 추진되었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2009년 전국사업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100% 이하로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 실시한다. 장애아동 1인당 월22만원(자부담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며, 언어·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이용자의 수요와 기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59.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제도 도입, 2010)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로 의심되는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1인당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검사 등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기회부여를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에는 의료수급자 36천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를 차상위계층(60천명)까지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60.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2011)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적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취업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시설 이용시간 종료 후 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 돌봄에 대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2010년 월평균 1만 가구에서 2011년에는 3만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또한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였다.
61.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2011) 13세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발생 또는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신속하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를 미리 파악해 대비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62.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제도, 2011) 2011년 4월부터 아동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친족관계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주하거나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63. (셋다운제도, 2011) 셋다운제도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심야시간대(0~6시)에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Q3. Recently introduced policies, programmes and action plans and their scope and financing**

64. (아동·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강화 및 차단 프로그램 보급 대폭 확대, 2009) 해외의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차단을 우회하는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URL차단방식의 장비를 도입토록 권고하고, 사업자가 설치를 완료(2008.12)하여 해외에서 유입되는 아동포르노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아동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강화시켰다. 2003년부터 무료 보급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보급을 대폭 확대(2009년 이후)하였다. 포털사이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5. (인터넷 윤리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2009)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던 인터넷 윤리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2009년 이후)하여 아동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익광고 방영, 캠페인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위한 이용자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66.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2009~2010) 2009년 9월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였고, 2010년 5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하였다.
67.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파견, 2010) 언어·교육 지원을 적

절히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한국어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도사) 파견 및 통번역서비스제공 등을 추진하였고,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부모-자녀 간 소통 증진을 위해 이중언어교실을 52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68. (다문화가족 대상 좋은 부모 프로그램 및 자녀 정서·생활지원 사업, 2010) 2010년 자녀 생애 주기별(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부모 프로그램 및 자녀 정서·생활지원 사업'을 시범운영하였다.
69. (범죄예방교실, 2010)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서장, 지구대장, 여청 전담강사 등)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범죄예방요령·피해 시 조치요령 등을 교육하는 '범죄예방교실'을 2010년 14,979개교 5,529,634명을 대상으로 실시 운영하였다.
70. (사랑의 교실, 2010) 비행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해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역할극, 미술치료, 봉사활동 등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전문 단체에 위탁·실시하는 '사랑의 교실'을 통해 2010년에 33개 단체의 17,8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Q4. Recent ratifications of human rights instruments

71.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동 협약의 주요사항인 평등과 차별금지, 착취·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이동, 교육, 건강, 근로 및 고용, 자립생활,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익보장 내용을 포괄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년 6~7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보고서에는 권리협약의 실제적 조항(제1~33조)에 대한 협약 유관부처의 이행실적, 관련 법령, 정책, 이행상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 Part III

**Q1. Please provide statistical data for 2008, 2009 and 2010, disaggregated by nationality, age, sex, ethnicity, geographic lo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on:**

- (a) The number of children deprived of a family environment and the type of care they receive, and the budgetary allocations for residential care institutions, foster homes and other forms of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 (b)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of children who were abused, neglected or sexually exploited. Please include information about any investigations or studies conducted thereon, as well as their outcomes;
- (c) The number of suicides committed by children; and
- (d)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who have been victims of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State party's borders, as well as the rate of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perpetrators

72. 전체 요보호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돌봄 형태별로 보면, 입양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양육시설 입소,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은 감소하고 있다.

<표 4> 요보호아동의 돌봄 형태

(단위: 명, %)

연도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
2008	9,284 (100.0)	4,297 (46.3)	667 (7.2)	2,838 (30.5)	1,482 (16.0)
2009	9,028 (100.0)	4,081 (45.2)	686 (7.6)	2,734 (30.3)	1,527 (16.9)
2010	8,590 (100.0)	4,219 (49.1)	623 (7.2)	2,124 (24.7)	1,629 (19.0)

자료: 보건복지부, 2008-2010 각 연도 자료 재구성.

73. 대안 돌봄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입양 예산의 경우 2008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아동양육시설 예산은 2009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 5> 대안 돌봄 예산배정

(단위: 백만원)

연도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
2008	220,402	9,465	78,153	8,580
2009	261,410	11,600	82,104	9,280
2010	247,615	13,306	91,875	9,307

자료: 보건복지부, 2008-2010 각 연도 자료 재구성.

74. 2010년 신고사례에 근거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국적으로 파악한 학대피해아동 수는 2009년 대비 감소하였다. 학대피해아동 수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0~12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던 방임아동 수는 2009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표 6> 신고사례에 의한 아동학대(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성별	남	2,801(50.2)	2,889(50.8)	2,810(49.7)
	여	2,777(49.8)	2,796(49.2)	2,847(50.3)
계		5,578(100)	5,685(100)	5,657(100.0)
1세미만		131(2.3)	139(2.4)	167(3.0)
1~3세		476(8.5)	487(8.6)	567(10.0)
4~6세		697(12.5)	710(12.5)	715(12.6)
7~9세		1,319(23.7)	1,249(22.0)	1,082(19.1)
10~12세		1,452(26.0)	1,481(26.1)	1,449(25.6)
13~15세		1,098(19.7)	1,248(21.9)	1,272(22.5)
16~18세 (2010년16~17세)		405(7.3)	371(6.5)	405(7.2)
계		5,578(100)	5,685(100)	5,657(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연도 자료 재구성.

<표 7> 방임아동 수(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남	1,691(54.5)	1,560(53.1)	1,472(51.1)
여	1,414(45.5)	1,379(46.9)	1,406(48.9)
계	3,105(100.0)	2,939(100.0)	2,878(100.0)
1세미만	91(2.9)	95(3.3)	136(4.7)
1~3세	307(9.9)	283(9.6)	371(12.9)
4~6세	403(13.0)	415(14.1)	404(14.0)
7~9세	800(25.8)	691(23.5)	565(19.7)
10~12세	824(26.5)	723(24.6)	705(24.5)
13~15세	512(16.5)	567(19.3)	532(18.5)
16~18세	168(5.4)	165(5.6)	165(5.7)
계	3,105(100.0)	2,939(100.0)	2,878(100.0)

주: 중복학대 미분류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연도 자료 재구성.

75.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의 한 형태인 '19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경찰청 단속 결과, 검거인원은 2008년 대비 2010년 크게 감소하였다. 성적 착취의 다른 형태인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수 또한 감소하고 있다.

<표 8>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2008	2,112	81	2,031
2009	2,182	125	2,057
2010	1,345	56	1,289

주: 연 나이 19세 미만자

자료: 경찰청, 2011.

<표 9> 성폭력 피해아동 수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성폭력 피해아동(13세미만)	1,220	1,017	1,012

자료: 경찰청, 2011.

76. 2009년 자살 아동 수는 2008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성별을 불문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다.

<표 10> 자살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계	190	277
남	97	149
여	93	128

주: 2010년 자료는 2011년 9월 발표.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77. 「형사법」 상 인신매매 및 성적착취, 학대에 관한 죄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벌에 관한 통계에서 피해자의 성별, 연령, 인종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처벌 통계를 취합하지 않고 각 법률별 통계만 집계 가능하다.

<표 11> 형사법 상 인신매매 및 성적착취, 학대에 관한 기소율

(단위: 건, %)

죄명	2008				2009				2010			
	기소	불기소	처리계	기소율	기소	불기소	처리계	기소율	기소	불기소	처리계	기소율
음행매개	0	0	0	0	0	0	0	0	0	0	0	0
미성년자약취유인등	31	143	174	17.8	34	153	187	18.2	30	148	178	16.9
영리등을위한약취등	20	46	66	30.3	22	73	95	23.2	24	71	95	25.3
국외이송약취	0	1	1	0	0	1	1	0	0	1	1	0
강요행위등	40	68	108	37.0	66	71	137	48.2	51	81	132	38.6
아동·청소년·성보호 인신매매	1	1	2	50.0	1	24	25	4.0	0	9	9	0
성매수등	537	671	1,208	44.5	612	608	1,220	50.2	493	537	1,030	47.9
알선영업행위등	44	37	91	48.4	92	102	194	47.4	44	57	101	43.6
음란물제작·배포 등	2	3	5	40.0	12	7	19	63.2	40	41	81	49.4
아동학사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복지법위반	56	106	162	34.6	39	117	156	25.0	28	63	91	30.8
청소년보호법위반	6,838	4,146	10,984	62.3	5,955	5,701	11,656	51.1	5,616	4,879	10,495	53.5

주: 기소는 구공판과 구약식, 불기소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보호사건송치,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법무부, 2011.

**Q2. Please indicate what percentage of familie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eligible to welfare services, education assistance, allowances and tuition especially provid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78.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매월 16만원~2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언어·청각능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등의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중증장애아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체 중증장애아동의 74.5%인 37천명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79.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이 중·고 교 학생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추가적으로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1,242명(13~18세 기준 등록 장애아동 43,408명의 2.86%)에게 지원하였다.
80.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아동에게 매월 2~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23,057명(등록장애아동 80,075명의 28.8%)에게 지원했다.
81.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및 양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및 제35조(장애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가정부양의 지원)제2항을, 장애아동 학비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를, 장애아동수당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를 법적근거로 하고 있다.

<표 12> 장애아동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3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16,356	28,313	30,23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681	547	714	1,493
교육지원	1,333	1,373	1,242	1,100
장애아동수당지원	16,001	17,724	23,057	22,844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Q3. In addition, the State party may list areas affecting children that it considers to be of priority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82. 정부는 학생 자율능력 향상 및 참여 증대, 범죄로부터 아동보호, 근로아동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및 지원을 증대하며, 국외입양 대비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예술 교육 강화 등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2-1. 학교문화선도학교(초·중·고) 지정·운영,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등 학생 스스로 자율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 사례 확산 등 학생 자율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82-2.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운영, ‘아동·여성 보호 1319팀’ 운영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82-3. 아동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업주 처벌 강화, 교육과 지도점검 강화 등에 의하여 아동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 82-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적 설치, 전자발찌제도 도입,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등에 의하여 아동대상 성폭력에 강력히 대처하여 아동인권 보호를 극대화할 것이다.
- 82-5. 드림스타트 사업, 디딤씨앗통장(CDA), 지역아동센터 사업 등의 추진으로 빈곤 아동대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완비해 나감으로써 일반아동과 동등한 기회를 빈곤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82-6.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입양수수료 확대 지원과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국외입양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할 것이며, 특히 장애아동 입양촉진을 위하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 82-7. 전국 초·중·고교에 예술 강사 파견 및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국립국악원 운영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문화예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